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80 발의연월일: 2022. 7. 27.

발 의 자 : 윤호중·강준현·김영주

김윤덕 · 김홍걸 · 이정문

이형석 · 임종성 · 임호선

장경태 · 한준호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용자의 접견은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거나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 법 시행령에는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해칠 우려가 없는 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 권이고,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장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

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의 접견장소와 관련 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접견) ① (생 략)	제41조(접견)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	②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	
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 <신 설></u>	3.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